

2009년도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편 사항

김현숙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장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은 많은 발전을 해왔다. 보육료 지원이 단적으로 그 발전규모를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위주의 소득계층별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년 하반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상반기 차상위계층에서 하반기에는 소득하위 50% 계층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보육료 지원가구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보편적 복지정책 지향에 맞추어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아래에서는 '09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여러가지 보육료 지원기준 개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위별 보육료 지원 기준소득 산출

'09년 상반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계층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였다. 하반기부터는 영유아가구의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하위 70%까지 차등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비율	정부지원				부모부담
	1-2층 (100%지원)	3층 (80%지원)	4층 (60%지원)	5층 (30%지원)	
기준소득 (단위: 만원)	151	213	298	427	

그림 1] '09년 상반기 보육료 지원 기준소득(만3세 기준 예시)

지원비율	소득하위			부모부담
	50% (100%지원)	60% (60%지원)	70% (30%지원)	
기준소득 (단위: 만원)	258	339	436	

그림 2] '09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 기준소득(만3세 기준 예시)

소득분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변경하여 보육료 지원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즉 영유아가구 중 50%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70%까지는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향후 지원 계층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합리화 추진

그간 보육료 지원 대상자 결정시 기초생보의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부모님들은 많게는 7~8가지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지자체 공무원은 그 서류를 가지고 하나하나 소득·자산조사를 하느라 업무부담이 매우 컸다.

기초생보는 극빈층 일부를 선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기초생보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에 보육료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소득·재산항목을 재검토하고, 소득·자산조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 사용

우선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서류 등을 부모님이 제출하였으나,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전산조회를 통해 반영하고, 일용직 근로자 등 공적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업소득의 경우 부모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함)에서 지자

체 공무원이 필요경비를 공제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필요경비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매출자료에서 필요경비까지 공제를 완료한 국세청의 최종 종합소득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과약의 자의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건물가액 평가방식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였다. 시가반영을 위해 공인중개사 가격이나 매매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부정확하고 민원 소지가 많았기에, 공적 조치가 가능한 공시가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의 공시지가와 유사하게 보완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자동차 환산방식개선

자동차기준은 그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부모님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민원이었다. 왜냐하면 2000cc 이상 자동차 가액의 33%를 재산으로 반영하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가액은 1.39%만 재산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자동차는 재산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비수준(보험료 및 운영비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보에서 엄격히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던 유산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가구의 85%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영유아가구의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이렇게 배기량 기준을 형평에 어긋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09년 하반기부터 기존 2000cc에서 2500cc 자동차로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였고, 궁극적으로 배기량기준의 폐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조부모의 소득·재산 미반영

그간 가구원의 기준을 아동기준 2촌 이내(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규정하여, 조부모의 소득·재산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의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편법(조부모의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기도 하고, 아동의 부모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조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기도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듯이 보육료 지원 시에는 조부모를 제외하여 아동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

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라.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불산입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과 전업주부에게 부과하여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 금융재산조회 실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선정기준 개편의 기대효과

이번 보육료 선정기준 개편으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득하위 70%까지 차등보육료가 지원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산상으로 공적인 소득·재산 자료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부모는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소득·재산조사시 자의성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보육료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에 한정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제도임을 감안하면, 기초생보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업무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